

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임미연 의원 등 6명(최홍린, 이영빈, 서보영, 김장관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5. 10. 2.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5. 10. 23.)

2. 제안이유

-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,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산불방지대책의 수립(안 제5조)
- 실태조사(안 제6조)
-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- 포상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
 - 「산림보호법」 제29조, 제3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10. 10.~10. 21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최윤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- 제정 조례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, 실태조사,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,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9조 및 제3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과 산불 방지 및 예방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산림자원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